

# 경운대학교 대학생활지원위원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의 정주형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대학생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대학생활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생활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생활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주관부서)** 우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관부서는 ‘대학생활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대학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진단 및 컨설팅
2. 대학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총괄
3. 대학생활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4. 대학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5. 위원회 운영 제반 사무

**제4조(운영부서)** ① 재학생 대학생활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대학생활지원센터 이외에 대학생활지원과 관련된 행정부서(단과대학, 센터 등)가 담당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생활지원 운영부서는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부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대학생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계획
2. 대학생활 프로그램 운영성과 결과보고
3. 대학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제5조(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1.23.>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대학생활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해당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는 전임교원, 교직원, 외부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4. 그 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대학생활지원센터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절차)**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부서별 대학생활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자체운영성과보고를 상정 받아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제8조(환류)** ① 위원회는 대학생활지원 운영성과 분석결과 및 도출된 개선안을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로 상정한다. <개정 2020.01.23.>

② 위원회는 각 운영부서에서 상정된 대학생활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별 편성·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한다.

③ 검토 및 심의를 마친 각 운영부서의 편성·운영계획서를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01.23.>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1.23.>

1.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